

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

[] 사용종료

[] 폐쇄

신고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		처리기간		30일(매립시설: 100일)	
신고인	상호(명 칭)			사업자등록번호			
	성명(대표자)			생년월일			
	주소(사무실)			(전화번호:)			
처리시설 소재지		(전화번호:)					
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종류	규격 (능력)	설치 승인 · 신고 또는 허가일	사용 개시 일	사용종료 (폐쇄) 예정일	매립시설인 경우		
					승인 · 신고 또는 허가 면적(㎡)	사용종료 면적(㎡)	매립량(㎡)
처분 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							
신 고 사 유							

「폐기물관리법」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 시설의 ([] 사용종료, []폐쇄) 신고서를 제출합니다.

년

월

일

신고인:

(서명 또는 인)

시 · 도지사, 유역환경청장(지방환경청장) 귀하

첨부서류	1.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계획서 가. 폐기물매립시설 설치 · 사용 내용 나. 사후관리 추진일정 다. 빗물배제계획 라. 침출수 관리계획(차단형 매립시설은 제외합니다) 마. 지하수 수질조사계획 바. 발생가스 관리계획(유기성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만 해당합니다) 사. 구조물과 지반 등의 안정도유지계획 2. 제69조의2제3항에 따라 검사기관에 제출한 사용종료 · 폐쇄 검사 신청 서류 사본	수수료 없음
------	--	--------

처리절차

신고서 작성

→

접 수

→

검 토

→

결 재

→

신고 수리

신고인

시·도지사, 유역환경청장(지방환경청장)